

6·25戰爭期 北韓軍 總政治局의 位相과 役割

高 在 弘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1. 문제 제기
2. 북한군 총정치국의 전신 : 북한군 정치문화부
3. 북한군 총정치국의 설치와 그 배경
4.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
5. 결 론

1. 문제 제기

“만약 제105탱크사단 안동수 정치문화부사단장이 전사하지 않았다면 (1950.7.6 오산전투) 류경수 105탱크사단장이 계급장을 버리고 사복을 입은 채로 후퇴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前 북한군 105탱크사단 정치군관 오기완 상위 증언, 2001. 4.

1950년 10월 김일성은 남침 실패에 따른 북한군 후퇴의 와중에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와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대 내에 당단체를 조직하고 기존 문화훈련국을 총정치국으로 개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결정은 북한군 역사상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커다란 군내 조직적 변화를 야기한 것이었다.

본고는 6·25전쟁기 북한군내 가장 커다란 조직적 변화였던 총정치국 설치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다시 말해 그 설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지위와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북한군 총정치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간 북한군 정치기관 연구와 관련, 소수의 귀중한 연구 성과¹⁾들이 있어 왔지만 주로 ‘당·군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한 연구 경향은 북한군 총정치국 연구를 당(黨)을 중심으로 한 외부적인 관점에서의 연구에 치중함으로써 북한군 내부의 개별적 요소들, 가령 총정치국의 군내 지위문제 혹은 군사지휘관과 정치군관간의 관계와 같은 연구 요소들을 간과해 왔다. 그런 이유로 ‘당·군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의 북한군 연구는 서방 세계의 군대에서는 볼 수 없는 사회주의 군대의 독특한 총정치국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6·25전쟁기 북한군 총정치국은 ‘군사단일제’를 원칙으로 하는 북한 군대 내에서 군사지휘관의 명령체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그들만의 ‘정치지휘계통’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각급부대 정치부지휘관도 해당 부대의 군사지휘관뿐 아니라 상급부대 정치부지휘관에게도 동시에 복종·보고해야

1) 백봉중, “북괴의 권력구조와 당·군속청 관계연구”, 국토통일원, 1977; 서동만, “북조선における 사회주의의 체제성립”, 동경대 박사학위논문, 1995; 안찬일, “북한군 정치기구에 관한 체계론적 연구”, 『안보학술논집』 제6집 2호, 1995;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0; 최주환, “북한의 당군관계”, 2001. 11; 유영구, “북한의 정치군사관계의 변천과 군내의 정치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편, 『전략연구』 4권 3호(1997), pp. 61~125; 강신창, “북한 공산주의의 당군관계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1987.

하는 독특한 ‘이중적 종속 및 보고’ 체계를 갖고 있었다. 북한 군대내 어느 군관도 정치군관을 제외하고 해당 부대 군사지휘관을 뛰어넘어 상급부대 상급 군관에게 복종·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총정치국과 정치군관은 군내 노동당 ‘입당’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기능의 담당자이며 모든 비상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군사규율 및 사상통제의 담당자로서 부대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당·반혁명 사건에 대해 중앙당에 직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총정치국이 ‘군의 정치적 도전을 방지’함으로써 노동당의 독점권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북한군 총정치국 연구는 북한군이 어떻게 최고사령관 김일성 개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김일성의 군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군사지휘관과 정치군관간의 긴장과 갈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s

2. 북한군 총정치국의 전신: 북한군 정치문화부²⁾

(1) 정치문화부의 설치와 발전

‘정치문화부’는 1946년 8월경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직속하에 창설된 ‘보안간부훈련대대부’ 대대본부내 일개 부서로서 참모부, 포병부, 후방부 등과 함께 병렬적으로 설치되었다. 초대 정치문화부장(政治文化部長)은 김일성과 의형제를 맺은 김일이었으며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정치담당부사령관

2) 북한군 창설기 정치문화부의 설치 배경 및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줄고, “북한군 창설기 문화군관의 지위와 역할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편, 『북한연구학회보』 8권 2호, 2004. 9. 참조.

(Zampolit)격인 문화부사령관(文化副司令官)은 김책³⁾이 담당하였다. 1947년 5월경 김일이 문화부사령관직을 이어받아 겸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내 ‘정치문화부’라는 공식 명칭은 일반적으로 ‘문화부’로 호칭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소련군 정치국의 기능이 한국어 번역으로 ‘문화’를 뜻하는 의미로 해석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⁴⁾ 그리고 문화부에 배속된 장교들을 ‘문화간부’ 혹은 ‘문화일꾼’으로 총칭하고 군내에서는 주로 ‘文化副聯隊長 동지’, ‘선전원 동지’, ‘조직지도원 동지’ 등 ‘직책’ 중심의 호칭이 사용되었다.

북한 지도부가 북한군내 ‘문화부’를 설치한 공식적인 이유는 부대의 “정치 의식을 제고시켜 현 정치노선을 옳게 파악토록 하며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⁵⁾ 보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인민군대 내에서 문화교양사업을 질적으로 일층 개선하고 교양사업의 사상적 수준을 제고시키며 전체 군무자들의 군사규율과 정치사상 상태를 강화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었다.⁶⁾ 이 ‘정치문화부’는 1948년 2월 북한군 창설을 거쳐 동년 9월 내각 산하 민족보위성의 문화훈련국으로 발전하였다.⁷⁾ 그리고 1948년 3월경 문화훈련국 조직의 대강은 문화부상(文化副相) 겸 문화훈련국장인 김일 총과와 부국장 김강 상좌 예하 ① 간부부, ② 조직부, ③ 선전부, ④ 출판부, ⑤ 총무부, ⑥ 구락부, ⑦ 협주단, ⑧ 『조선인민군』사, ⑨ 적공부 등으로 구성되어

3) “북조선인민위원회 조직 각 부서와 위원 씨명 발표”, 『노동신문』, 1947년 2월 23일자,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이하 『북사집』으로 약칭) 35』(국사편찬위원회, 2001), pp. 429~430.

4) “North Korea Today-For American Eyes Only”,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Assitant Chief of Staff, G-2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한림대 아시아 문화연구소 편, 『주한미군정보일지 부록』(1990), p. 532.

5) “북조선 보안사업 총결보고”(1946년 11월 예상). 萩原 遼 편, 『북조선의극비문서』 상권 (동경: 夏の書房, 1996), p. 404.

6) “조선인민군대 내에 중대문화부중대장제 실시에 관한 결정서-내각결정60호(1949.5.27)”, 위의 책, 중권, pp. 21~23.

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사』 1권(개정판)(국방부, 1977), p. 91.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⁸⁾ 그리고 문화훈련국의 하위 위계조직인 정치문화부는 각 사단·여단, 연대, 대대에 이르기까지 군사위계조직에 대응해 조직되었다.⁹⁾ 중대의 경우에는 1949년 5월 27일 내각 결정 제60호를 통해 문화부중대장제(文化副中隊長制)를 신설함으로써 북한군 문화훈련국의 전체 조직이 완성되었다. 북한군 정치문화부는 소련군의 역사적 산물로서 문화훈련국의 훈련이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생 북한군에 훈련이 필요했을 것이다.

(2) 북한군 정치문화부의 위상과 특징

1) 북조선로동당과의 관계

북한군은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창설시기부터 당이 아니라 북조선(임시) 인민위원회 직속기관으로 있었으며 북조선로동당도 북한군 ‘정치문화부’를 공식적으로 당중앙위원회에 종속시키지 않았다. 1946년 10월 21일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에서는 “보안훈련소, 철도경비대는 전 인민의 군대인바, 군대내 당군화를 방지하고 군대의 통일적 통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오 내에 당조직을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¹⁰⁾ 그래서 북한군은 북한 지역에서 당조직, 당세포, 당원회의가 없는 유일한 곳이 되었으며 노동당원과 비당원의 차별이 엄격히 금지된 ‘인민의 군대’처럼 보였다.

8) 각 부서의 간략한 기능에 대한 설명은 HQ, USAFIK, *Intelligence Summary Northern Korea*(이하 ISNK로 약칭), no.138.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이하 『북한정보요약』으로 약칭) 3(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pp. 346~349.
 9) “KLO #497(3사단 문화부)”, “KLO #513-A(105탱크여단 1보병대대 문화부)”, 『주한미군정보일지 부록』, pp. 449~451, pp. 457~460; “부록-보병연대조직편성표”, 萩原 遼 편, 앞의 책, 하권, p. 451.
 10) “군대내 당조직에 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9차회의결정서(1946.10.21)”, 『북사집 30』, p. 39.

북조선로동당이 군내 당조직을 건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소련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¹⁾ 당시 소련공산당의 중요한 점령정책이자 지시사항은 정치세력간 '통일전선'의 구축이었기 때문에¹²⁾ 남로당과 북로당이 양립된 상태에서 북한 지역에서의 '당군화'를 추진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군내 당조직을 건설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조선로동당의 軍 통제라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黨·軍 관계가 결코 무시된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북한군 문화부와 북조선로동당이 이면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비록 공식적으로 북한군 문화부가 당중앙위원회 앞에 직접 책임을 지지는 않았지만 북한군내 평양학원을 비롯, 각 군사학교와 내무성 경비여단 그리고 조선의용군이 모체가 된 북한군 제5, 6, 12사단에 조직된 당조직들은 해당 부대 문화부지휘관의 지도와 통제하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북조선로동당 중앙조직위원회 위원이자 민족보위성 문화부상이었던 김일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¹³⁾

이의 연장선상에서 북한군내 모든 문화군관들은 100% 노동당원들로 당 중앙조직위원회와 간부부에서 임명하였다. 비록 문서상에 나타난 문화군관의 임명과정에서는 민족보위상 최용건의 명령에 의해 임명·배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모든 문화군관은 중앙당에 의해 소집되고 임명되었던 것이다.¹⁴⁾ 그래서 문화군관들은 당이 신뢰하는 '열성당원'으로 부대내

11) 북한의 공식문헌에 의하면 군내 당조직을 두지 않은 것은 '통일전선 문제 때문'이었다고 한다. "조국의 자유독립과 민주건설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 『인민경제대학 통신 교재』(제2학년용) 제2호, 1956. 11, p. 36;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역사비평사, 1995), p. 240. 재인용.

12) "1945년 12월 25일 Shikin의 보고서", p. 3. 정성임, "소련의 북한점령정책", 『세계지역 연구논총』 13권, 1호, 1999, pp. 149~172. 재인용.

13) "내무성 당단체들의 당정치교양사업강화를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조직위원회 제12차회의결정서(1949.12.9)", 『북사집 29』, p. 399. "금후 당조직이 있는 인민군 부대들에 대해서도 당교양을 실시할 데 대한 대책을 취할 것을 김일 동무에게 책임지운다"고 결정.

14) 오기완, "소련유학생으로 뽑히기까지", 『신동아』(1966년 5월호), pp. 337~339; 오기완

비당원 군관의 승진 배제 및 ‘조동’시키는 방법으로 간부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북한군을 ‘노동당의 군대’로 만들어 나갔다.

2) 군사지휘관과의 관계

북한은 군대건설시 군대조직의 기본으로 해당 부대 군사지휘관의 의지와 명령에 의하여 모든 사업이 집행되는 군대내 유일관리제인 ‘군사단일제’¹⁵⁾를 채택하였다.

그래서 각급부대 문화부지휘관은 해당 부대 군사지휘관보다 일계급 아래인副지휘관으로서 군사지휘관의 명령을 수행할 의무와 함께 군사지휘관의 방대한 업무 중 비군사적 업무를 담당하는 정치적 ‘보조자’로서 정의되었다.¹⁶⁾ 실제로 소련고문관들은 인민군 문화부상 겸 문화훈련국장인 김일을 ‘꼰술완트’라고 칭했는데 이는 “어떤 사업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는 그 방면의 전문가 또는 학습한 교재내용에 대하여 학생을 도와주는 교원”을 의미했다.¹⁷⁾ 따라서 민족보위성 문화부상인 김일은 민족보위상 최용건을 정치적으로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군에서 공식적 지위는 현실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우선 김일은 1946년 2월부터 당 영도기관에 등용할 간부를 임명하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었으며 김일성과 의형제였다. 이 점은 북한군 문화부상의 지위가 정치권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각급부대 문화부지휘관은 해당 부대 군사지휘관의 명령집행 여부에 대해 예하부대 군사지휘관들의 군사규율 상태를 감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당에 직보’할 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 있었다.

면담, 2001년 4월.

15) 과학원출판사 편, 『조선말사전』 상권(평양: 과학원출판사, 1955), p. 419.

16) “조선인민군대 내에 중대문화부중대장제 실시에 관한 결정서-내각결정60호(1949.5.27)”, 앞의 책, 중권, p. 21.

17)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전서』 하권(극동문제연구소, 1974), p. 317.

따라서 북한군 문화부는 부대내 군사규율을 책임지고 군내 당원과의 사업을 관장하는 ‘당의 보조자’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군내 문화부와 문화군관의 실제적 지위는 군사지휘관을 비롯한 군사군관과 문화군관을, 군사부서와 문화부를 조직적·인적·기능적으로 분리시키는 특징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가. 조직적 분리성

북한군 문화부는 조직적으로 군사지휘관의 명령체계에서 일정정도 벗어날 개연성이 있는 그들만의 ‘이중적 종속 및 보고’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가령 최말단인 문화부중대장은 중대의 부지휘관으로서 중대장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동시에 상급부대 문화부대대장에게도 복종해야 하며 중대의 정치사상 상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갖고 있었다.¹⁸⁾ 마찬가지로 문화부대대장도 대대장과 상급부대 문화부연대장에게 동시에 복종·보고해야 하며, 문화부사단장은 사단장과 문화부상인 김일에게 복종해야하고 부대의 사상 상태에 대해 보고하는 체계를 가졌다.¹⁹⁾ 북한군내 어떤 다른 군사군관도 해당 부대의 군사지휘관을 뛰어넘어 상급부대의 상급장교에게 복종·보고할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북한군 문화부는 군사지휘관의 명령체계와는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독자적인 정치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인적 분리성

문화부의 문화군관들은 과거 교육과 경력에 있어 군사지휘관을 비롯한 군사군관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군의 군사·정치간부의 양성기관은 군사지휘관의 모교인 ‘북조선보안간부학교’와 문화군관의 모교인 ‘평양학원’으로 분리되어 출발하였으며 1949

18) “조선인민군대 내에 중대문화부중대장제 실시에 관한 결정서-내각결정60호(1949.5.27)”, 앞의 책, pp. 21~23.

19) 제262군부대(2사단 자주포대대) 문화부, “정치전투보고서(1950.8)” 및 “미상 사단산하 문화부연대장의 보고”, 萩原 遼 편, 위의 책, 하권, pp. 184~234, pp. 331~332.

년경 문화군관 총원 1,892명 중 군사학교 출신자는 89명에 불과하였다.²⁰⁾ 이것은 대부분의 문화군관들이 정규 군사교육을 받지 않은 군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령 제2정치군관학교나 중앙당학교 등에서 군사교육을 배웠다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술·지휘훈련이 아닌 기초 군사훈련에 불과한 것들이었다.²¹⁾ 따라서 대부분의 문화군관들의 임명과 배치는 군종·병종에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실례로 제105탱크여단 안동수 문화부여 단장을 비롯, 여단 문화군관 전원은 과거 사격훈련조차 받지 않은 군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문화군관들은 군사지식과 부대지휘에 무지하기 때문에 군사지휘관 유고시 지휘관직을 이어받지 못하는 군관이였다.²²⁾ 과거 경력에 있어서도 북한군내 문화군관과 군사군관의 상호 移籍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군관들, 김책, 김일, 임해, 김강, 김경석, 조정철, 전창철, 김재욱, 서철 등과 군사군관이라 할 수 있는 김광협, 최춘국, 유경수, 오백룡, 최용진, 전우, 지병학, 김창봉, 최현, 최광, 허봉학 등의 경력과 비교해 보면 문화군관들의 경력이 부대지휘나 작전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기능적 분리성

북한군 각급부대 문화부지휘관들은 해당 부대 군사지휘관의 명령집행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예하부대 군사지휘관들의 군사규율 상태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²³⁾ 가령 문화부중대장은 중대장의 명령집

20) 국사편찬위 소장 미간행 북한노획문서, “문화간부 성원 통계표(1949년)”, 제2정치군관학교 1,010명(53.4%), 중앙당학교 출신은 53명(2.8%), 사동학교 140명(7.4%), 대내등용 564명, 기타 군사학교 89명(4.7%)에 불과.

21) “조선인민군 제2정치군관학교 김의도 졸업증서(1950년 5월 21일)”, 그의 평양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SNK, no. 37, pp. 12~13; 『북한정보요약』 2권, pp. 100~102 참조.

22) 극동문제연구소 편, 앞의 책, 중권, p. 53; 이런 이유로 1958년 이후에야 정치군관학교 졸업생을 소위로 임관시켜 보병소대장 경력을 갖게 한 다음 ‘정치군관’으로 복귀시키고 있다.

23) “조선인민군내 내에 중대문화부중대장제 실시에 관한 결정서”, 앞의 책, 중권, pp. 21~23.

행에 대해 예하 소대장들의 군사규율 상태를 감시하고 문화부대대장은 대대장의 명령집행에 대해 예하 중대장들을, 그 상급도 마찬가지였다. 즉 문화부상은 민족보위상의 명령집행에 대해 사단·여단장을 비롯, 전 부서의 군사지휘관들의 군사규율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부대의 전반적인 ‘사상통제’를 담당하는 기능도 가졌다. 일례로 최태환은 민족보위성 현관 벽보관에 자작시를 게재했다가 문화훈련국에서 반혁명적 시라는 이유로 자아비판을 받을 뻔 했다고 한다.²⁴⁾ 그 외 부대내 정치교육에 대해서도 문화부의 정치상학의 계획과 내용은 문화부의 독자적인 결정과 계획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졌다.²⁵⁾ 이런 문화부의 기능들은 부대내 군사업무와 비군사 업무의 기능적 분리성과 전문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문화부와 군사부서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었다.

3. 북한군 총정치국²⁶⁾의 설치와 그 배경

(1) 총정치국의 설치

북한군 총정치국 설치가 공식화된 것은 1950년 10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 정치위원회 “인민군대내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데 대하여”라는 김일성의 결론 보고를 통해서였다.²⁷⁾ 그러나 북한군 총정치국 조직은 이미

24) 최태환, 『젊은 혁명가의 초상』(공동체, 1989), pp. 72~75.

25) 371군부대(제3사단), “1950년도 하기전투정치훈련 제1단계훈련계획표”, 萩原 遼 편, 위의 책, 중권, pp. 330~363.

26) 북한군 정치국만을 굳이 總정치국이라 한 이유는 각 군종·병종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總字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정치국 소속 기관들을 정치군관이라고 부르고 그 중 각급부대 정치부 책임자를 ‘정치부장’으로 호칭하였다.

그 이전 시기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 9월 말경 민족보위성 문화부상인 김일이 철직(직위해제)되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인 박헌영이 초대 정치국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²⁸⁾ 문서상에서 확인된 바로는 1950년 10월 14일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의 문서 하단에 최고사령관 김일성과 총정치국장 박헌영이 연명되어 있었다.²⁹⁾ 따라서 총정치국의 설치시기는 1950년 9월 말경에서 최대 10월 14일 이전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총정치국 설치의 당 중앙위 정치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이미 김일성을 비롯한 소수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후퇴의 와중에 굳이 북한군내 총정치국을 설치하고 당조직을 건설한 공식적 이유는 “북한군에 대한 당의 영도와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이 요구하는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³⁰⁾ “군대내 강철같은 군사규율과 전투능력을 제고시키며 당의 역할과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보장”하기³¹⁾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군 통제의 강화가 필요했으며 “당이 요구하는 대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히 이 시기가 남침이 실패로 돌아간 매우 민감한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북한군내 총정치국 설치의 정치권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7) 『김일성저작집』 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147~152.

28) 강상호, “내가 경험한 북한속칭”, 연재 9회, 『중앙일보』 1993년 3월 8일자. 서동만 박사는 박헌영이 초대 총정치국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김일성이 그를 통해 연안계에 집중된 힘을 분산시키고 당시 전선 이남의 빨치산 활동에 대한 원활한 지원과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서동만, 앞의 논문, pp. 238~242.

29)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명령(1950년 10월 14일)”, 萩原 遼 편, 앞의 책, 하권, p. 61.

30) 김일성, “인민군대내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데 대하여-1950년 10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김일성저작집』 6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149.

31)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과업-로동당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동지의) 보고, 1950.12.23(일명 별오리회의)”, 중앙정보부편, 『북괴군사작전자료집』(정보부, 1974), p. 167 혹은 『조선중앙년감(1951~1952년판)』, pp. 24~37.

1950년 10월 21일 김일성은 “인민군대내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데 대하여”라는 보고를 통해 기존 북한군 문화훈련국을 ‘총정치국’으로, 군단에서 대대에 이르기까지 각급부대 ‘정치문화부’를 ‘정치부’로 개편하고, 군단에서 구분대, 중대에까지 정치부 부대장, 구분대장 직제를 내오도록 지시했다. 그 이후 1950년 11월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조선인민군내 당단체사업 규정”을 비준하여 북한군대내 당단체들의 지위와 사업을 규정하고, 총정치국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³²⁾ 따라서 북한군내 커다란 조직적 변화가 이어졌다. 북한군 군단 이하 각급부대 文化部와 文化副指揮官들은 政治部和 政治部長³³⁾으로 개칭되고 이들 政治部長의 지도와 감독하에 상설 당기관인 중대 당세포, 대대(초급) 당위원회, 연대 당위원회³⁴⁾를 설치토록 했으며 여단·사단, 군단, 총정치국에는 당조직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비상설 위원회로서 ‘당꼬미씨야’를 설치토록 하였다. 이로써 그 동안 군내 문화부가 할 수 없었던 당회의 개최 등 당 조직사업과 군내 입당을 통한 당장성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총정치국의 조직³⁵⁾과 관련해서는 내무성 정치국과 교통성 정치국 ‘사업규정’ 등을 통해 볼 때 박헌영 총정치국장을 정점으로 조직과 교육 등을 담당하는 부국장으로 김재욱, 박금철 등 2명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구성 부서로는 조직지도부(당위원회담당과, 당원(지도)과, 당원통계과), 정치교양부(문화교육과, 구락부), 간부부, 민청사업부, 총무부, 적공부, 검열부, 기요과 등으로 구성되어 기능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존 민족보위성

32) “조선인민군내 당단체사업 규정(1950년 11월 29일 로동당중앙위원회 비준)”, 『북한군사론』(북한연구소, 1978), pp. 527~531.

33) 정치부장은 각급부대별 정치부책임자이며, 총정치국 소속 군관들과 함께 ‘정치군관’으로 총칭되었다.

34) 연대 당위원회의 경우, 참모장, 작전부장, 조직지도원, 선전원, 민청동맹위원장, 보위부장, 대대당위원회 군관 등 7~9명 정도로 구성.

35) “교통성 정치국사업규정(1951)”, “내무기관내 당정치사업지도에 대하여”, “사회안전기관내 당 정치사업지도에 대하여”, 『북사집 29』, pp. 541~559과 “조선인민군내 당단체사업 규정”, 앞의 책, pp. 527~531 참조.

직속하에 있던 제2중앙정치군관학교, 조선인민군 신문사, 출판사, 협주단 등이 총정치국 직속으로 편입되었다. 총정치국의 하위 위계조직은 각 군단·사단·여단, 연대, 대대에 이르는 군사위계 조직에 대응해 각급부대 정치부가 조직되었으며 중대에 정치부중대장이 존재했다. 1951년경 당시 각 사단마다 약 90여명의 정치군관이 배치되었다.³⁶⁾ 따라서 조직적으로는 기존 문화훈련국의 편제가 확대되고 그 기능에 있어 당사업 부문이 추가된 발전적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총정치국 설치 이후 총정치국에 의한 군내 당 조직사업이 순조롭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실례로 1951년 4월 공군지휘부의 당위원회 조직시 공군지휘부의 경찰부장 및 건설부장들이 노동당원을 규합하여 선출된 당위원회를 비난·무시하고 자신들이 당조직의 지도권을 장악하려 하였으며 총정치국의 사업방식을 부정하는 요소도 조중연합사령부 소속의 북한군 제1, 2, 3, 5군단 부대들에서 나타났다.³⁷⁾ 우여곡절 끝에 북한군내 당조직 사업은 1951년 7월 21일 “조선인민군 내에서의 노동당단체 설치의 총화와 정치기관들의 사업정형”에 관한 정치위원회 결정을 통해 볼 때 1951년 7월경 북한군 각급부대의 당위원회 구성과 정치기관의 개편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북한군 총정치국 설치가 요구된데는 1950년 6월 남침 이후 3개월 남짓의 전쟁상황 속에서 군 정치기관의 개편과 위상 강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필요·충분조건이 성숙되었기 때문이었다.

36) 오기완 면담, 2001. 4. 그 외 U.S.D.S.,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s of Takeover*(Washington: USGPO, 1961), p. 45에서는 각 사단마다 30~40명선으로 주장.

3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권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81~82.

(2) 총정치국의 설치 배경

1) 당의 軍통제 강화

가. ‘火線入黨’³⁸⁾ 추진

김일성은 남침 직후 북한군의 ‘전투력 강화’와 ‘사기 진작책’의 일환으로 북한군 내에서 대대적인 ‘화선입당’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기존 북한군 내에는 당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입당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김일성은 최고 전쟁지도기구인 ‘군사위원회’³⁹⁾에서 전선사령부와 후방사령부, 각 군단(육·해·공) 사령부에 파견한 ‘군사위원’⁴⁰⁾들에게 ‘화선입당’의 책임을 부여하였다. 1950년 7월 13일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중앙조직위원회에서 “군인들은 전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다 희생되면서도 자기를 조선로동당원으로 불러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군인들이 당원이 될 것을 얼마나 절실히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하고 군사위원들에게 전선에서 용감히 싸우는 군인들을 화선입당시킬 준비를 하도록 명령하였다.⁴¹⁾

이들 ‘군사위원’들은 당과 정부의 전권대표로서 해당 부대의 당 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지도 통제하여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었다.⁴²⁾ 그러나 북한

38) ‘화선입당’은 전선에서의 입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특징은 1년간의 후보당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원이 될 수 있으며 입당에 대한 보증인과 피보증인과의 교제연한을 제한받지 않았다.

39) 공식문서로서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발표(1950.6.26)된 것이었으나 김일성조차도 1950년 12월 21일 조선로동당 제3차 전원회의에서 당정치위원회가 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언급하였다.

40)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편, 『조선전사 25』(1981), pp. 162~163. 전선사령부나 군단의 경우 군사위원이란 명칭이 붙여지고, 사단 이하는 기존 문화부사단장, 문화부연대장들 직위 명칭이 붙여졌다.

41) “인민군 군인들을 화선입당시킬데 대하여-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군사위원에게 준 지시(1950.7.13)”, 『김일성전집』 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129~130.

42) 김일성,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

군 전선사령부 군사위원인 문화부상 김일, 제1군단 군사위원인 김재욱(농림성 부상 출신), 제2군단 군사위원 김찬(재정성 부상), 후방사령부 군사위원인 남일(교육성 부상)과 김열(당 조직국장), 공군 군사위원인 윤공흠(해방전 비행학교 수학) 등등 그들의 면면은 대부분 당관료 출신들이지 군사작전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들의 파견 목적이 전쟁승리를 위해 군사지휘관들의 군사작전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쟁 수행에 있어 ‘상과 별’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북한군 내에서 실무적으로 준비한 것이 ‘열성당원’들이던 기존 문화군관들이었다. 실제로 1950년 7월 24일부 ‘대동산허천강’이라는 암호명의 문화부 지령은 “전투에서 우수한 전투원을 당에 입당시키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전체 전투원을 당의 영향 아래 끌어넣어 사기를 고양”시킬 것, 각급 문화간부는 급히 입당문서를 비준 즉시 문화부로 제출할 것 등을 지시하고 있었다.⁴³⁾ 이와 같이 화선입당을 위해서는 군관이든 전사이든 기존 북한군내 ‘열성당원’에 해당하는 문화군관 혹은 정치군관의 추천이 있어야만 했다. 그들은 일선부대, 전선에서 북한군 군관과 병사들에 대한 ‘상과 별’을 평가하는 ‘작은 군사위원’이었던 것이다.

‘賞’에 해당하는 화선입당의 청원방법은 죽음을 무릅쓴 채, “돌격을 전개하여 부여된 임무를 결사적으로 완수하는 것”이었다.⁴⁴⁾ 가령 중대에 전투 명령이 하달된 경우, 정치부중대장은 전투에 앞서 “후퇴라는 것은 곧 죽음과 같다”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의 명령⁴⁵⁾과 함께 전 부대원에게 작전의 중요성과 당에 대한 충성심 및 승리에 대한 신념을 고무시키고 ‘입당’ 및 상

양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1952.7.7)”, 『김일성저작집』 7권, p. 315.

43) “1950년 7월 24일부: 대동산허천강”, SA 2012, BOX 5.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한국전쟁시기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편, 『외교안보연구』 제3호(1998. 12), p. 67 재인용.

44) 김재욱, “조선인민군은 조국해방전쟁의 과정에서 더욱 단련, 성장하여 조선인민의 강력한 무장력이 되었다”, 『노동신문』 1952년 2월 7일자.

45)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1950년 10월 14일)”, 앞의 책, 하권, p. 65.

훈의 기회를 강조하여 영웅적 전투행위를 강요하는 식이다. 정치부중대장이 영웅적 행위를 감행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군관이나 병사는 화선입당의 영예를 갖게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치군관에 의해 선발된 화선입당 추천자는 중대(당세포)에서 입당이 결정되고 사단 당꼬미씨야에서 입당이 비준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⁴⁶⁾ 따라서 화선입당이라는 것은 북한군 군관과 병사들에게 노동당 입당이라는 인세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투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투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화선입당 이후 군대내 노동당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50년 6월 이전 북한군내 노동당원의 비율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공산당원이 많았던 조선의용군 계열의 부대⁴⁷⁾와 내무성 경비여단 등을 제외하고 북한에서 조직된 1, 2, 3사단이나 105탱크여단의 경우 대체로 10% 내외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⁴⁸⁾ 이후 전쟁기간중 북한군내 입당자 수는 14만명에 달했으며,⁴⁹⁾ 이 기간중 전체 노동당 입당자 총수 45여만명과 비교하면 1/3에 해당하는 숫자이고 휴전 당시 조선인민군 병력 총수 28만 4천명을 기준으로 보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이와 같이 북한군내 노동당원의 획기적인 증가는 기존 ‘인민의 군대’라는 외투를 벗고 명실상부하게 북한군이 ‘노동당의 무장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46) “전시환경에서 당조직사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조직위원회 제48차 회의결정서, 1950년 12월 31일”, 『복사집 29』, p. 525.

47) 이홍영 저, 강경성 역, 『중국의 정치엘리트』(서울:나남, 1997), p. 42. 대대장급 이상은 100%, 소대장이나 중대장급은 90%, 일반 병사들도 20% 정도가 공산당원이었다.

48) 오기완 면담, 2001. 4. 실제로 ‘조선인민군 제249부대(제2사단) 5대대’의 북로당 당원비율은 총원 902명중 132명(14.6%) 정도였다. 국사편찬위 소장 미간행 북한노획문서, 이주철, “북조선로동당의 당원과 그 하부조직에 관한 연구”, 고려대, 1999년 박사학위논문, p. 203 재인용.

49) 리권무, 『영광스러운 조선인민군』(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58), p. 52.

나. 군사규율 및 사상통제 강화

1950년 9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이 패퇴과정에서 보여준 기강 해이 및 무규율적 현상들에 대해 북한 지도부는 군사규율 및 사상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1950년 10월 21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북한군이 후퇴과정에서 보여준 무규율적이며 무질서한 현상과 관련해 일부 부대장들과 군관들이 명령과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그 결과 북한 군내 정치사업을 책임지는 김일이 문화부상직에서 철직당했으며 그 외 서울방어사령관이었던 무정을 비롯, 후방사령부 군사위원 김열 그리고 김한중, 최광 등이 사단장직에서 철직당했다.⁵⁰⁾ 실제로 북한군의 후퇴 과정에서 많은 부대가 상부 명령없이 진지를 버리고 후퇴하는가 하면 군관들이 무기와 계급장을 버리고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후퇴하였으며, 최고지휘부의 명령을 제때에 실행하지 않는 등 무규율적 현상들이 보여졌다. 특히 북한군 일선 부대에서는 1950년 11월 초부터 12월 한달 남짓 약 900여건의 탈영사건이 보고되기도 하였다.⁵¹⁾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 북한군에서 이와 같은 무규율적 현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부대 감시의 눈’이 약했기 때문이며,⁵²⁾ ‘좀 더 무서운’ 당조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김일성도 “후퇴과정을 통하여 군대내 당단체를 조직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듯이 이후 정치군관들에게는 부대내 변절자, 명령불복종자, 전투기 피자, 도주자 등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군중적으로 처리하든가 직접 처단 혹은 군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⁵³⁾ 그리고 군내 당위

50)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과업”, 『김일성전집』 12권, pp. 444~474. 그 외 김일성 “새로운 반공격준비를 철저히 갖추자-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군관, 장령회의에서 한 연설(1950. 10.30)”, 『김일성저작집』 6권, pp. 364~366 참조.

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역, 앞의 책, pp. 78~79.

52) 오기완 면담, 2001. 4.

53) “명령-부대제도확립에 관하여”, 萩原 遼 편, 앞의 책, 하권, p. 281; “최고사령관 81호

원회 제도가 도입된 후 북한군의 탈영사건 및 당원들의 규율위반 사건은 1/3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었다.⁵⁴⁾

한편 북한 군대내 사상통제⁵⁵⁾와 관련해서도 남침 이전 북한군 각급부대 문화부가 부대내 사상동태와 특별사고에 대해 일반적 수준의 '주간보고'를 작성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였다.⁵⁶⁾ 그러나 전쟁상황은 이러한 문화부의 일반적인 사상통제나 정치사업의 성격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다. 즉 전투에 임하는 부대원들의 적대의식을 고취하고 부대의 통제와 안정화를 기여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었다. 가령 남침 직후부터 기존의 '주간보고'는 '매일보고'로 바뀌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군사지휘관의 작전수행 정형뿐 아니라 개별 군관들과 병사들의 성향 및 사적 발언, 전투수행 태도까지 점차적으로 특정 이름을 거명하며 상급기관에 보고되었다. ○○소속 ○○○ 상병은 전투중 총을 쏘지 않고 숨어있거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는 등이었다. 이와 같은 보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자명하다고 하겠다. 반대로 이런 보고를 통해 전투에서 공헌을 한 군무자는 표창과 상을 받게 되었다.⁵⁷⁾ 따라서 북한군의 군사규율과 사상통제 강화를 위해서 총정치국과 당조직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스탈린의 조언

북한군 창설기 정치문화부 설치가 소련의 영향이었듯이⁵⁸⁾ 1950년 10월

명령(1950.9.11)", 앞의 책, 중권, p. 61.

54) 군사편찬연구소 편역, 앞의 책, pp. 78~79.

55) 전쟁으로 인민군대가 증편되었고 군사지식이 없던 지방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간부들이 군관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군대내 정치사상교양이 절박하게 요구되었다고 한다. 김일성,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앞의 책, p. 305.

56) "보고", 萩原 遼 편, 앞의 책, 중권, pp. 379~383.

57) 제655군부대 문화부, "전시정치문화사업", 萩原 遼 편, 위의 책, 중권, pp. 390~396; "제315군부대(9사단) 문화부사단장 최달언의 지령"(1950.8), 위의 책, 하권, p. 330.

전쟁기간중 북한군 총정치국 설치도 역시 소련의 영향을 일정정도 받았다고 보여진다. 1950년 7월 소련공산당은 “소련 군대에 대한 당의 리더십을 강화시키기 위한 새롭고 중요한 조치를 결정”했는 바, 주요 골자는 군사지휘관에 대한 정치장교의 통제를 강화시키는 조치였다.⁵⁹⁾ 그리고 이것이 1950년 10월 북한군의 재정비 및 총정치국의 설치와 일정정도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스탈린은 1950년 8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급격히 무너지는 북한 지도부와 인민군을 위해 1950년 10월 1일 다음과 같은 권고를 스티코프 북한대사에게 내려보냈다. “엄중한 정황 속에서 조선의 동지들이 조연과 원조를 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전제하면서 그것을 거절할 경우 “조선지도부의 자신감 상실을 강화한다”고 비판하면서 김일성과 박헌영을 만나 다음 4가지 권고를 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중 세 번째가 “일어난 정황은 강고한 지도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완강한 방위를 조직하는 새로운 임무에 맞게 지도부를 재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 지도부의 자신감 상실을 종식하고 지도하는 동지들의 임무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규정하며 각자에게 국가방위의 개별문제에서 명확한 임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⁶⁰⁾

이와 같은 스티린의 조언 직후 북한군 전선사령부 군사위원 겸 민보성 문화부상인 김일이 철직당하고 북한군내 가장 커다란 조직적 변화인 북한군내 당조직 건설이 결정되었으며, 군내 정치기관인 문화훈련국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시킨 총정치국을 설치하게 되었다. 더구나 민감한 시기에 김일성과 전쟁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수행한 북한 내 명실상부한 제2인자인 박헌영 당부위원장이 총정치국장으로 취임하였다.

58) 줄고, “북한군 정치기관의 특성연구 1945~1950”, 통일원 편, 『북한 및 통일관련논문집』 1권, 2002, pp. 71~108.

59) Roman Kolkowicz, *The Soviet Military and the Communist Party*(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 77.

60) Rodina, No.4. 1993, pp. 80~81. 와다 하루끼 저, 서동만 역, 『한국전쟁』(창작과 비평사, 1999), pp. 192~193 재인용.

결국 북한군내 당조직 건설과 총정치국 설치는 북한의 초기 남침 실패로 발생할 수 있는 김일성 정권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지도부를 재정비하고 국가 방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부여가 필요하다는 스탈린의 조언이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1951년 5월 총정치국 사업의 전반적인 강화 및 정치사업 조직의 기본 문제에 대한 일개 과정의 강의가 소련고문단에 의해 준비되었으며 북한군 지휘관에 대한 총정치국용 지도교재로서 특별선집이 발간되기도 하였다.⁶¹⁾

따라서 김일성과 박헌영은 강고한 지도부와 완강한 방위를 조직하는 새로운 지도부의 면모로서 북한군 정치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높인 총정치국 설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4.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

총정치국은 기본적으로 이중적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당중앙위원회에 직속되어 있는 ‘당중앙위원회 군내 부서’로서 북한군내 당사업 일체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또 다른 하나는 민족보위성내 여타 군사부서와 마찬가지로 일개 기능부서로서 북한군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1) 조선로동당과의 관계

1950년 10월 이후 북한군 총정치국은 기존 문화훈련국이 북한군내에서 가졌던 정치사상 교육과 군사규율 유지 등 중요한 정치적 기능에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북한군내 당조직 건설과 통제를 총정치국과 각급부대

6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역,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2권, p. 84.

정치부장이 담당함으로써 기존에 없었던 당적 업무와 권한이 새롭게 부여되었다. 다시 말해 ‘당의 군 통제’는 비공개적, 제한적 형식에서 벗어나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형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의미에서 총정치국은 사실상 기존 문화훈련국의 기능과 형태에 당적 기능과 권한이 부여된 보다 발전적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당 중앙위원회 군내 부서’

우선 북한군 총정치국은 당 중앙위원회의 군내 부서인 당정치기구로 공식화되었다.⁶²⁾

기존 문화부는 북한군 창설기부터 공식적으로 당 중앙위원회에 종속되지 않았으며 북한군내 일부 조직되었던 당조직(군사학교 및 5, 6, 12사단)에 대한 지도와 통제도 당 중앙상무위원이자 북한군 문화부상 겸 문화훈련국장인 김일을 통해 사안에 따라 위임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었다.⁶³⁾ 그러던 것이 1950년 10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 정치위원회에서 북한군 중대급에 당세포, 대대와련대급에 (초급)당위원회, 여단급 이상에는 비상설 위원회인 당꼬미씨야 등을 조직할 것을 결정하고 각급 당단체들에 대한 조직 지도와 통제를 총정치국 및 각급부대 정치부에서 하도록 명문화하였다.⁶⁴⁾ ‘조선인민군내 당단체사업 규정’에서도 북한군내 당단체들의 모든 사업-조직, 당회의, 입당, 책벌, 출당, 당원통계-등은 총정치국 예하 각급 정치부와 정치부장의 직접 지도하에 이루어지며 노동당 중앙위원회 앞에서 당

62) “조선인민군내 당단체사업 규정”, 앞의 책, pp. 527~531.

63) “내무성 당단체들의 당정치교양사업 강화를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조직위원회 제12차회의결정서(1949.12.9)”, 앞의 책, p. 399. “금후 당조직이 있는 인민군 부대들에 대해서도 당교양을 실시할 데 대한 대책을 취할 것을 김일 동무에게 책임지운다”고 결정.

64) 김일성, “인민군내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데 대하여-1950년 10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앞의 책, pp. 147~152. 당시 당꼬미씨야는 현실적으로 매우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심의에 제기된 정책안은 사실상 이미 정치부에서 작성한 것이었다. 말 그대로 결정기구가 아닌 협의기구였다.

사업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었다.

그리고 대대당위원회는 시·군당위원회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 북한군 내에서 노동당원으로의 입당을 위한 수속과 심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내 입당 절차는 중대세포회의나 당회의를 통해 심의하고 대대당위원회와 대대당회의에서 결정하며 그 최종 비준은 총정치국장이 지명하는 당 꼬미씨야에서 하도록 했다. 단, 전투환경에서는 입당에 대한 결정권을 사단의 경우에는 정치부연대장과 여단의 경우 정치부대대장에게 부여하였다. 그리고 입당한 당원의 당증 수표 및 수여의 권한은 각급 정치부장과 그 대리인 및 총정치국장 등이 가지게 되었다.⁶⁵⁾ 특히 각급부대 당위원회 위원장을 정치부장이 아니라 각급부대 정치부내 조직지도원에게 담당케 함으로써 당위원회가 ‘군사단일제’를 훼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동시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부대장과 정치부장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⁶⁶⁾ 그러나 당 정치사업 문제의 최종 책임과 결정을 당위원회가 아니라 정치부장의 권한에 부여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각급부대 군사지휘관을 당위원회에서 제외시키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북한군대내 각급 당위원회는 각급부대 정치부장의 수중에 놓여 있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북한군내 당단체 사업의 지도기관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였지만 구체적인 지도는 북한군 총정치국에 위임했다. 즉 당이 신뢰한 가운데 총정치국장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었다. 총정치국장의 임명도 북한군의 모든 장령임면권을 가진 김일성이 행사했지만 그 최종 임명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임명토록 공식화되었다. 이것은 북한군 총정치국이 ‘당의 군내 부서’이며 총정치국장 직위는 ‘군내 당 책임비서’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65) “조선인민군내 당단체사업규정”, 위의 책, pp. 527~531 참조. 그 외 『김일성저작집』 6권, pp. 145~152 참조.

66) 연대 당위원회의 경우, 참모장, 작전부장, 조직지도원, 선전원, 민청동맹위원장, 보위부장, 대대당위원회 군관 등 7~9명 정도로 구성.

이로써 북한군 내에서 할 수 없었던 당원회의 개최 등 당조직 사업과 군내 입당을 통한 당장성 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공식화되게 되었다.

따라서 총정치국은 공식적으로 민족보위성의 한 성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내 부서'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독자적인 정치지휘계통 소유

총정치국은 군대내 당사업과 관련하여 북한군내 군사지휘계통과는 분리된 독자적인 총정치국만의 정치지휘계통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총정치국은 과거 문화훈련국보다 공식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군지휘관을 중심으로 한 군사명령체계에서 훨씬 벗어나게 되었으며, 참모부·포병부·후방부 등 '군사부서'들과는 구별되는 '정치부서'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군의 군사지휘체계는 최고사령관 겸 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 전선사령관 김책 · (후방사령관 최용건) → 전선사령부 참모장 강건 → 전선사령부 군단장 → 사단/여단장 → 련대장 → 대대장 → 중대장 → 소대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 조선로동당 위원장 겸 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 부위원장 겸 총정치국장 박헌영 → 당 중앙위원 겸 각 사령부파견 군사위원 → 군단/사단/여단 군사위원 · 정치부장(당꼬미씨야) → 연대 정치부장(당위원회의) → 대대 정치부장(초급당위원회) → 정치부중대장(중대세포회의)로 이어지는 정치지휘계통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군사지휘계통과 분리된 정치지휘계통의 존재는 '군사단일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북한군 내에서 정치부장들이 해당 부대 군사지휘관의 명령체계에서 일정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소한 군내 당사업과 관련하여 총정치국장은 당중앙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민족보위상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군대내 당사업과 관련

한 결과 보고 역시 각급부대 정치부장들은 그들의 직속상관인 해당 부대 군사지휘관을 뛰어넘어 상급부대 상급 정치부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통성 정치국’과 ‘내무성 정치국의 사업규정’ 등에 따르면 정치부장들은 “상급 정치기관 책임자 앞에 자기 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로서 사업보고를 제출”토록 되어 있었다. 첫째, 사단 정치부장은 총정치국장에게 사단 정치부의 사업정형과 전체 성원의 정치도덕 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를 제출하며, 둘째, 관내에서 발생한 비상사건(탈영, 월남, 비전투손실) 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보고하며, 셋째, 정치적 및 경제적 어려움(감싸니야) 사업정형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제출, 이하 정치부연대장도 이에 준하여 각각 상급 정치부장에게 보고를 제출토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총정치국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앞에 정기적으로 사업보고를 제출하고 민청사업에 대해 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제출토록 하였다.⁶⁷⁾

다시 말해 각급부대 정치부장들은 군사지휘관의 명령체계에서 일정정도 벗어나 있었으며 상급부대 정치부장에 복종·보고하는 유일한 군관으로서 부대내 비상사건에 대한 최종 책임자였던 것이다. 이로써 1950년 10월 이후 북한군은 1945년 8월 북한을 점령했던 소련군의 경우에서처럼 정치와 군사가 분리된 ‘이원지휘체계’를 분명히 가지게 되었다.

3) 정치군관의 당적 권한 강화

1950년 11월 2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조선인민군내 당단체사업 규정’에서는 당 중앙위원회와 총정치국으로부터 군단·사단에 당꼬미씨야를 조직하고 입당과 출당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도록 하였다. 전투상황에

67) “교통성 정치국사업규정(1951)”, “내무기관내 당정치사업지도에 대하여”, 앞의 책, pp. 541~559과 “조선인민군내 당단체사업규정”, 앞의 책, pp. 527~531 참조.

서의 입당에 대해서는 사단의 경우, 연대 정치부장과 여단의 경우 대대 정치부장에게 입당의 결정권을 부여했다.

특히 남침 이전의 군대내 당원 책별 권한과 관련 文化副聯隊長급 이상은 당원책별을 시·도당부에 제기하는 소위 '당원책별 청원권'을 가지고 있었다.⁶⁸⁾ 그러나 1950년 10월부터는 군내 당조직과 총정치국을 당중앙위원회에 직속시킴으로써 지방 당부와 군내 당조직을 상호 분리시키고 군내 당조직과 정치부장에게 '당원책별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군내 당조직은 지방 시·군 당위원회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군대내 개별 노동당원에 대한 문제 즉 입당뿐 아니라 당원의 의무 위반 등 책별과 출당에 관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즉 당중앙위원회는 군단장과 군사위원들에 대한 개별적 문제를 취급하고, 사단장·군단 정치부장에 대해서는 총정치국의 승인아래 당꼬미씨야가, 연대장·부사단장·여단장은 군단정치부장의 승인아래 군단 당꼬미씨야, 대대장·부연대장은 사단정치부장의 승인아래 사단 당꼬미씨야가 중대장·부대대장은 정치부연대장의 승인 아래 연대 당위원회가 취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이하인 전사와 하사관도 세포위원회와 대대초급당위원회 및 총회에서 심의토록 하였다.

이로써 북한군 총정치국을 비롯, 군단에서 중대에 이르기까지 소위 정치부장들은 각급부대 군관이나 하전사의 노동당 입당과 출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권한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실로 총정치국과 각급부대 정치부는 당중앙위원회가 위임한 군에 대한 당적 권한을 통해 명실상부한 당의 군통제 기제로서 자리매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군 총정치국과 각급부대 정치부 그리고 정치군관들은 민족보위성의 여타 부서 등 참모부, 포병부, 후방부 등 군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뛰어넘어 '당의 군대'라는 노동당의 의지를 실현하는 명실상부한 '당의 군내 부서'이자 '군내 당대표'라고 할 수 있다.

68) "군대내 당조직에 관하여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9차회의 결정서(1946.10.21), 『북사집 30』, p. 37.

(2) 군사지휘관과의 관계

군사지휘관과의 관계에서 있어 총정치국의 지위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하나는 문서상에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군사지휘관의 ‘정치적 보조기관’이라는 형식적 지위와 군사지휘관을 감시·통제하는 실제적 지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총정치국의 지위가 이중적인 이유는 총정치국의 진정한 역할이 “군의 정치적 도전을 방지”하고 북한군을 최고사령관 김일성 개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소위 ‘김일성의 군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1) 총정치국의 형식적 지위: 군사지휘관의 정치적 보조기관

북한군 각급부대 군사지휘관과의 관계에 있어 북한군내 총정치국과 정치군관의 지위 규정은 1951년 9월 노동당이 비준한 ‘교통성 정치국 사업규정’과 ‘내무성 정치국 사업규정’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총정치국은 “민족보위성의 한 성원으로서 민족보위상의 정치적 보조기관”이라는 것이다. 김일성도 1951년 8·15해방 6돌에 즈음하여 발표한 ‘명령’에서 “정치일꾼들은 지휘관의 방조자”임을 분명히 하였다.⁶⁹⁾

우선 1950년 10월 21일 당중앙위원회에서의 북한군내 총정치국 설치에 대한 결정이 있었지만 총정치국은 정치기관으로서 북한군을 통합시키는 여타 부서(참모, 포병, 후방)와 마찬가지로 상호 전문적 업무에 개입할 수 없는 독립적인 기능 부서로서 위치 지어졌다.⁷⁰⁾ 특히 북한군의 부대 지휘에 있어 ‘군사단일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여전히 군사지휘관보다 우월한 혹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북한군 부

69) 김일성, “8·15해방 6돌에 즈음하여 -명령”, 『김일성저작집』 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442~443.

70) 여정, 『불계 물든 대동강』(동아일보사, 1991), pp. 26~28. 그러나 상급부대 정치부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하급부대 후방업무에 관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의 ‘군사단일제’는 김일성에 의해서 뿐 아니라⁷¹⁾ 총정치국 스스로도 강조되었다.

‘군사단일제’하에서 각급부대 政治部長들은 여전히 해당 부대의 군사지휘관보다 일계급 아래인 정치담당부사령관 격으로 해당 부대 군사지휘관의 명령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가령 중대장이 대위일 경우 政治部 중대장은 상위이며, 대대장이 중좌일 경우 政治部 대대장은 소좌로서 여타 부서의 군관들처럼 여전히 군사지휘관의 명령체계에 있었다.

마찬가지로 북한군 각급부대의 당단체의 지위도 “당과 정부가 군대 앞에 제기한 과업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지휘관들의 전투적 방조자로 된다”고 규정되었다. 더구나 각급부대의 당위원회 위원장을 정치부 조직지도원이 담당, 하급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수준으로 보이게끔 함으로써 ‘군사단일제’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인상을 보였다. 이렇듯 표면적으로 북한군내 정치기관의 설치는 각급부대 군사지휘관들의 방대한 업무 중 비군사적 업무를 담당해 줌으로써 군사지휘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규정되었다.⁷²⁾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지위 규정은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었다. 현실적으로 총정치국과 정치군관들의 형식적 지위 이면에는 북한군을 감시·통제하는 놀랄 만한 실제적 지위가 놓여있었다.

2) 총정치국의 실제적 지위와 역할

가. 총정치국의 군내 지위

당 중앙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국가기관에 설치한 정치기관의 지위는 보통 해당 부서 최고 책임자의 정치적 보조기관으로 정의되었으며 김일성도 북한군 정치군관과 당단체를 “군사지휘관의 전투적 방조자”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북한군 각급부대 군사지휘관들은 여전히 ‘군사단일제’하에서 해당

71) 김일성, “8·15해방 6돐에 즈음하여 -명령”, 앞의 책, pp. 442~443.

72) “조선인민군대 내에 중대문화부중대장제 실시에 관한 결정서”, 앞의 책, pp. 21~23.

부대의 총지휘자·책임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총정치국을 “군대내에서 당과 정부의 전권자이며 당단체의 지도자”⁷³⁾임을 명확히 했다.

이와 같은 이율배반성은 북한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에 불과한 것이었다. 우선 총정치국(장)의 이중적 지위를 보자. 북한군 총정치국장은 그 직위 자체로 볼 때는 내각 부수상보다도 한 등급 아래의 직급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박헌영의 총정치국장 취임은 박헌영의 강등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인가? 북한군 내에서 일반적 특징으로 ‘서열’을 결정하는 것은 계급이 아니라 직책의 중요성과 당적 지위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가령 북한군 참모부 작전국장의 계급이 대좌에 불과하고 대열 국장이 소장일지라도 대열 국장은 작전국장에게 거수경례를 붙여야만 했다. 이것은 북한군의 서열이 ‘계급’이나 ‘직위’ 중심이 아니라 ‘직책’과 당적 지위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군 총정치국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총정치국의 형식적 지위가 아니라 총정치국(장)의 직책과 당적 지위에 놓여있다는 것이며 박헌영의 총정치국장의 취임으로 총정치국의 위상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총정치국장인 박헌영은 김일성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스탈린과 모택동을 만나 전쟁을 계획한 당사자였다.⁷⁴⁾ 내각 부수상 겸 외무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이자 당중앙위 부위원장, 군사위원회 위원, 그리고 1950년 9월 30일 김일성과 단 둘의 연명으로 중국군 지원을 요청한 장본인으로서 북한내 제2인자였다.

총정치국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비준된 지시 사항을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총정치국장의 독자적인 판단하에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고사령관인 김일성의 군내 명령집행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다.⁷⁵⁾ 이는 총정치국장의 직위가 단순히 내각의 일부인 민족보위성의

73)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 진행정형과 그 강화를 위한 금후 제 대책에 대하여 -당중앙정치위원회 제125차 회의 결정서, 1952년 7월 7일”, 『북사집 29』, p. 187.

74) 외무부 편, “한국전쟁 문서요약(1949. 1~1953. 8)”(외무부, 1996) 참조.

75)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명령(1950년 10월 14일)”, 萩原 遼 편, 앞의 책, 하권. pp. 61~62.

부지휘관급이 아니라 ‘당중앙위원회 軍 책임비서’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코 민족보위상이자 후방사령관이며 민주당원인 최용건은 차치하고 전선사령부 사령관 김책에게조차도 명령을 받을 위치에 있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 사실상 북한군은 최고사령관을 정점으로 정치와 군사가 분리된 ‘이원지휘체계’를 형성한 것이었다.

나. 군사지휘관의 감시자

북한군에서 총정치국장 박헌영과 각급부대 정치부장들은 북한군대내 군사규율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총정치국 예하 각급부대 정치부와 정치부장들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최고사령관을 비롯, 해당 부대별 군사지휘관의 명령 및 지시사항에 대해 예하부대 군사지휘관의 집행 여부를 엄격히 감시하는 것이었다. 가령 최고사령관 김일성이 ‘명령’을 발할 경우, 총정치국장은 바로 ‘지령’을 통해 각급 사령부 및 군단장들이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한다.⁷⁶⁾ 연이어 군단의 정치부와 정치부장들은 군사지휘관인 군단장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군단 예하 사단장들의 명령집행 여부를 감시하고, 각급 사단의 정치부와 정치부장들은 사단장의 명령에 대해 사단 예하 연대장의 집행 여부를 감시한다. 그 이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급부대 군사지휘관의 명령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연대 정치부장은 연대 예하 대대장들을, 대대 정치부장은 대대 예하 중대장들을 그리고 중대 정치부장은 중대장 예하 소대장들이 중대장의 명령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총정치국과 각급부대 정치부의 이러한 감시기능은 그들만이 독특한 ‘보고’체계를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중대 정치부장은 중대 예하 소대장들에 대해 중대장의 명령집행 정형을 상급부대인 대대 정치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마찬가지로 대대 정치부장은 예하 중대장들의 명령집행 정형에 대해 연대 정치부장에게,

76) “총정치국장 지령 -1950년 10월 15일”, 위의 책, pp. 63~67.

그 이상 여단·사단 정치부장은 예하 연대장들에 대해 군단 정치부장에게 보고하고, 군단 정치부장은 예하 사단장과 여단장들의 명령집행 정형을 총정치국장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총정치국장은 군단장들의 명령집행 정형에 대해 최고사령관 김일성에게 보고하는 식이다.⁷⁷⁾ 결국 북한군대에서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만이 총정치국의 군사규율 감시와 통제 체인에서 벗어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총정치국과 각급부대 정치부장들은 최고사령관 명령에 대하여 북한군 전체의 군사지휘관들이 제대로 명령을 수행하는지 엄격히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군 총정치국 존재야말로 북한군 전체를 최고사령관인 김일성 개인의 의지와 명령대로 움직이고 김일성 개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소위 ‘김일성의 군대’로 만드는 기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 부대의 실질적 통제자

그렇다면 총정치국과 각급부대 정치부는 북한군의 실질적 통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여전히 북한군의 하급부대로 내려갈수록 100% 노동당원으로 구성된 정치군관들의 당적 지위는 비당원인 군사지휘관의 지위를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6·25전쟁이 한창인 1951년 4월경 북한군 고급군관들 중에서조차 비노동당원이 존재하였다. 군단 참모장 7명의 경우 1명이 비노동당원이며, 사단/여단장 28명 중 1명이, 사단/여단 참모장 27명중 2명이, 그리고 보병연대장 67명 중 2명이, 연대참모장 61명 중 4명이 비노동당원이었다.⁷⁸⁾ 거의 지휘군관의 90% 이상이 노동당원으로 전당한 조선의 용군 계열 부대의 군관을 제외하고 북한지역에서 창설된 부대의 하급 군사지휘관과 조중연합사령부 창설(1950년 12월) 이후 김일성의 명령체계에 속해 있던 최고사령부 직속 제4, 6, 7군단소속 하급부대 군사지휘관들의 비노동당원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⁷⁹⁾ 1950년

77) “교통성 정치국사업규정”과 “내무성 정치국사업규정”, 『복사집 29』, pp. 545~551.

78) 군사편찬연구소 역편,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2권, 2001, p. 71.

79) 위의 책, p. 74.

10월 이후 정치부장의 지위는 비노동당원인 군사지휘관 부대 내에서 군사 작전 수행이라는 전문화된 군사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사지휘관의 지위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설사 노동당원인 군사지휘관이 있는 부대라 할 지라도 현실적으로 당조직의 감독자이자 군내 입당과 출당 등 중요한 정치적 권한을 가진 정치부장은 휴가를 줄 권한조차 없는 군사지휘관보다 훨씬 높은 지위처럼 보여졌을 것이다.

더욱이 정치군관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政治部長이라는 ‘호칭’이었다. 과거 ‘군사단일제’의 원칙하에 군사지휘관의 예하에 들어가는 의미에서 붙여진 文化副軍團長, 文化副師團長, 文化副聯隊長은 군단 政治部長, 사단 政治部長, 연대 政治部長 등으로 바뀌어졌다. 이 호칭의 변화는 마치 정치부장은 해당 부대의 ‘副사령관’이 아니며 따라서 정치부장이 과연 해당 부대 군사지휘관의 예하에 들어가는 것인지 더욱 애매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副지휘관이 아니라 군내 개별적인 역할자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실제로 남침 이후 정치군관의 ‘매일보고’에는 군사군관과 사병의 이름이 그들의 공과와 함께 직접 거명되어 상급 정치부로 보고되었다. 더구나 각급 정치부장의 지도와 감독하에 있는 당위원회의 임무는 “지휘관이 부대와 구분대들 앞에 제기한 과업들을 어떻게 잘 실행하겠는가 하는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는 것이었고 김일성도 당위원회가 해당 군사지휘관이 어느 고지를 돌격할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시한데에서도 명확히 표현되었다. 또한 북한군 정치군관들에게 당원의 개별적 심사에 필요한 문건이라는 이유로 개인에 대한 ‘전투평정서’를 작성하는 권한이 주어졌다.⁸⁰⁾ 어느새 북한군 정치군관들은 1917년 소련 붉은 군대의 막강한 정치위원(commissar)으로 변모되어 있었던 것이다.⁸¹⁾ 이것은 전시 상황에서 정치부장과 각급

80) “전선에서 당문건을 유실한 당원들에 대한 당적문제 취급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조직위원회 제48차회의결정서, 1951년 1월 23일”, 『북사집 29』, p. 530.

81) 소련 적군의 정치위원의 지위는 당이 파견한 ‘당대표’로서 계급에 관계없이 제한받지 않

당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이 군사지휘관과의 관계에서 무엇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 이유로 북한군내 총정치국 설치와 그에 따른 위상 강화는 곧 정치군관의 위상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북한군내 고질적 문제인 정치군관과 군사지휘관과의 갈등이 더욱 불거질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51년 9월 총정치국장대리 김재욱의 명의로 총치국에서 발간한 『군사 단일제를 강화함에 있어 군내 로동당 단체의 제과업: 지휘관 및 정치간부에게 부여하는 참고자료』라는 소책자 속에서는 당시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첫째, “일부 당단체는 전투에 있어서 지휘 상태와 전투 임무에 대한 부대의 집행상황에 관해 지휘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고 지적되었으며, 둘째, “당단체가 부대의 지휘관과 협의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향을 시정해야 한다.” 셋째, “어떤 조직체든지 지휘관이 그 사업계획을 비준하지 않으면 안되고 당단체의 사업계획은 정치부 책임자가 비준하여 반드시 지휘관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명시했으며, 넷째, “단일 책임자인 군사지휘관이 그가 지휘하는 부대에서 전권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등등 당단체와 정치부장의 월권에 대해 비난하였다.⁸²⁾ 심지어 김일성은 내무기관 정치일꾼들이 행정일꾼들에게 당성이 약하다고 욕설을 퍼붓는 폐단까지 있음을 비난했듯이⁸³⁾ 당시의 군사지휘관과 정치부장의 권한 충돌과 갈등 현상은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정치부장이란 호칭은 이내 개정되었다. 이것은 북

으며, 정치위원에 대한 도전은 중대범죄로 간주되었고, 그의 가장 중대한 책임은 반혁명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Albert Seaton, Joan Seaton, *The Soviet Army, 1918 to the Present*(London: the Bodley Head, 1986), pp. 62~63.

82)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한국전쟁시기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 제3호(1998.12), p. 73 재인용.

83) 김일성, “내무일꾼들 속에 인민적 사업작풍을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전집』 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408~423.

한군 내에서 이 호칭의 변화가 차지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군 내에서 이 호칭변화는 북한군 부대내 군사지휘관과 정치군관간의 우열과 주도권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52년 7월 7일 당중앙위원회는 전선이 교착된 채 진지전으로 접어들자 그 동안 군사지휘관들이 제기했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총정치국과 정치부는 “지휘관의 명령지령 및 군사적 행정적 지시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비판함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1950년 10월 이래 사용해 온 북한군 사단 이하 정치부장 호칭을 다시 군사지휘관의 예하에 들어간다는 의미인 政治副師團長, 政治副聯隊長 등으로 개정하였다.⁸⁴⁾ 그러나 그 이상으로 ‘군사단일제’를 강화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일성은 정치일꾼들이 군사지휘관들의 사업에 “결함이 나타날 때에는 제때에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⁸⁵⁾라는 군사지휘관에 대한 ‘결함시정권’을 부여할 정도였다.

이와 같이 김일성이 정치기관의 월권에 대해 비난하면서도 ‘군사단일제’를 강화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유는 총정치국이야말로 군사지휘관의 감시를 통해 “군의 정치적 도전을 방지”하고, 북한군 전체를 최고사령관 김일성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김일성의 군대’로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북한군 총정치국과 각급부대 정치부장은 군내 당대표로서 북한군 부대의 실질적인 통제자였던 것이다.

84)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 진행정형과 그 강화를 위한 금후 제대책에 대하여”, 앞의 책, pp. 187~188.

85) 김일성,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의 중심과업(1951.3.6)”, 『김일성저작집』 6권, pp. 325~326.

5. 결 론

본 연구는 6·25전쟁기 북한군 총정치국과 관련, 그 설치목적과 배경을 살펴보고 총정치국의 위상이 ‘조선로동당 ↔ 총정치국 ↔ 군사지휘관’의 상호관계 속에서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군 내부적인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군 총정치국의 전신은 1946년 보안간부훈련대대부 대대본부에 설치된 ‘정치문화부’로서 북한군내 가장 영향력 있는 부서였으며, 정치문화부 문화군관들은 열성당원들로서 군종·병종에 상관없이 당경력과 충성도에 의해 북한군 군관으로 배치될 수 있었다. 그들은 군내 군사군관들과 조직적으로 구별되었으며 교육·경력에 있어 분리되었고 기능에 있어서 독자성을 가짐으로써 상호 갈등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었다.

1950년 6월 남침 이후 3개월 남짓 동안 북한 지도부는 남침 실패와 북한군의 후퇴과정을 통해 당의 군통제 강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부는 첫째, 대대적인 ‘화선입당’의 추진, 둘째, 북한군 군사지휘관들에 대한 군사규율 강화, 셋째, 부대내 정치사상적 통제 강화 그 외 남침 실패에 따른 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도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스탈린의 조언 등이 총정치국의 설치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기 총정치국은 기본적으로 이중적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당중앙위원회에 직속된 ‘당중앙위원회 군내 부서’로서 북한군내 당사업 일체에 책임을 졌으며, 동시에 다른 하나는 민족보위성내 여타 군사부서와 마찬가지로 일개 기능부서로서 북한군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특히 노동당과의 관계에서 총정치국은 북한군의 기존 군사명령체계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정치지휘체계를 갖고 있었으며 군내 당조직 사업 및 당원의 개별적 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자였다. 반면 군사지휘관과의 관계에서

총정치국은 여전히 군사단일제하에서 군사지휘관의 '정치적 보조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급부대 정치부지휘관들도 군사지휘관보다 일계급 아래인 상태로 군사지휘관의 명령을 수행할 의무를 가진 '정치적 보조자'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총정치국과 정치부지휘관들은 해당 부대 군사지휘관 이외에 상급부대 정치부지휘관에게도 복종·보고해야 하는 '이중적 종속 및 보고' 체계를 가진 군사지휘관들의 감시·통제자였다. 그들은 군사지휘관의 명령체계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은 유일한 군관으로서 부대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당·반역, 군사규율 위반에 대하여 '중앙당에 직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6·25전쟁기 총정치국은 결국 남침 실패에 따른 '군의 정치적 도전'을 방지하고 북한군을 최고사령관인 김일성 개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소위 '김일성의 군대'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군내 군사지휘관과 정치부지휘관간의 긴장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 고 문 헌

- Roman Kolkowicz, *The Soviet Military and the Communist Part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 Timothy Colton, *Commissars, Commanders and Civil Author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Yang Hyun-soo, *The political Officer in the Soviet Military*, Columbia univ. Ph.D., 1995.
- 萩原 遼(하기하라 료) 편, 『미국·국립공문서관소장 북조선의 극비문서』 상·중·하권, 동경:夏の書房, 1996.

- HQ USAFIK, 1945~1949, *G-2 Weekly Summary*, 『미군정정보보고서』 제11~15권, 일월서각, 1989.
- HQ USAFIK, 1945~1948, *Intelligence Summary Northern Korea*,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제1, 2, 3, 4권, 국내영인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주한미군정보일지-부록』,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0.
-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전31권, 국사편찬위원회, 1982~1998.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1~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1973.
-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편, 『조선전사』 제23~24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중앙일보사 특별취재반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하권, 중앙일보사, 1991.
- 최태환, 『젊은 혁명가의 초상』, 공동체, 1989.
- 여정(강수봉) 지, 『붉게 물든 대동강』, 동아일보사, 1991.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사』 1권, 국방부, 1967.
-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1권, 고려원, 1990.
-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0.
-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창군기에서 한국전쟁직전까지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 제2호, 외교안보연구원, 1997.
- 서동만, “북조선における 사회주의の 체제성립”, 동경대 박사학위논문, 1995.
- 오기완 면담, 2001년 4월 27일.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북한군 병사수첩』, 군사편찬연구소, 200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비에프의 6·25전쟁 보고서』 전4권, 군사편찬연구소, 2001.

(원고투고일 : 2004. 10. 13, 심사완료일 : 2004. 11. 10)

주제어 : 6·25전쟁, 북한군, 정치군관, 지휘관, 총정치국

<ABSTRACT>

A Study on the Stance and Role of the General Political Bureau within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during the Korean War

Ko, Jae-hong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NKPA) in the early stage of the Korean War partially adopted into the System of Political Department peculiar to the Soviet Army to include deputy commanders for political affairs, or 'Culture' as the Koreans phrase it. So, the Political Cultural Department within the Ministry of the People's Armed Forces (MPAF) was not operated as an independent body, and there was not even the official link between the party and the military. But the Political Cultural Department personnel functioned covertly as an agent of the Korean Workers' Party (KWP) Central Committee.

The General Political Bureau (GPB) within the NKPA was established in October 1950. Although normally under the control of the MPAF, the GPB was actually under direct control of the KWP Central Committee.

During the Korean War, all political activities wer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GPB. It was responsible for ensuring the political reliability of the NKPA. It did so through the organization of party committees and front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NKPA hierarchy, placement of the KWP members in key positions, planning political indoctrination, and supervision by assistant political commanders and political departments.

Especially the GPB had a chain of political command separated from that

of the MPAF extending to the lowest echelons of the NKPA. Heads of the political department at each echelon of the NKPA had a status as the deputy commander for political affairs. They reported not to their respective echelon commanders, but rather regularly reported on the political morale of the soldiers and the political measures undertaken to and receive directives from head of the political department of the next-higher echelon.

Also, They could report directly to the KWP Organization Department on the military commander's anti-party activities, undiscipline, treason, etc.

What does this mean? The GPB personnel in the NKPA can be defined as a watchdog, functioning on behalf of the KWP. Therefore, the role of the GPB was to check the political challenges of commanders by failure of early war and to make the NKPA led by Kim Il-sung.

This has often been a source of tens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Political Officers and Military Officers within the NKPA.

Key Words : Korean War, North Korean People's Army, Political Officer, Commander, General Political Bureau

K C I